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7월 8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7월 9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7월 23일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

나. 제안이유

-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가 '14년부터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규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증원하고,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 10월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증가하는 수급자 보장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1,610명 → 1,620명(+10명)
- 직종별 정원조정
 - 일반직 : 1,572명 → 1,581명(+9명)
 - 6급이하 : 1,472명 → 1,481명(+9명)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 +4명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6명
- 자연감소 정원 조정 : -1명(일반직 → 지도직)
- 지도직 : 33명 → 34명(+1명)
 - 농기계 전담인력 확충 : 지도사 +1명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장 지침(안전행정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안전행정부)

○ 예산조치 : 기준인건비 범위 내 운영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백 인 엽

○ 본 조례안은

-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가 '14년부터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규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증원하고,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 10월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증가하는 수급자 보장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4명을 증원하고,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6명을 증원하였으며, 지도직 1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는 1,610명에서 1,620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가 '14년부터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규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증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 10월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증가하는 수급자 보장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